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12. 13 선고 2019가합10346 판결 [차량지입보증금 등 청구]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3 선고 2020나10148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12. 13 선고 2019가합10346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

담당변호사 김주열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조종만

변론 종결 2019. 11. 1.

판결 선고 2019. 12.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8,943,049원 및 그 중 32,4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6,543,049원에

대하여는 2019. 4. 25.부터 각 2019.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2019. 9. 15.부터 피고가 별지 '차량의 표시' 기재 화물차량에 'C' 번호판을 부착·봉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날까지 월 5,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9,754,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0. 일반화물 주선업,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C 대우24톤장축카고트럭(별지 '차량의 표시' 기재 화물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위탁차량의 표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원고에게 영업용차량번호와 함께 그 경영권을 위탁한다.

제3조(위수탁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차량매도나 말소시까지로 한다.

제4조(경영권의 독립)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수탁받은 경영권으로 자기의 책임 하에 화물을 수주하여 운송사업을 하며 운송수익금은 전액 원고가 가진다.

제5조(경영수탁료) ① 원고는 매월 수탁료로 250,000원을 경영권수탁의 대가로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물가상승 등 인상요인에 따라 필요시 피고는 적정한 경영수탁료를 조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책임) ① 원고는 차량의 운행, 관리에 따른 고장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등을 자신의 책임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종합보험(통합공제)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해약) ① 원고와 피고 쌍방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합의하여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행의 최고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반 원고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③ 피고는 위 ②항 1호 사유 발생 시 피고 소유인 번호판을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7.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물차량운송주선계약 및 '계약기간: 2014. 7. 1. ~ 2015. 7. 1., 계약내용: 피고는 계약한 화물의 운송을 원고에게 우선 의뢰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운송 의뢰받은 화물의 운송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운송주선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계약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중략)..., 피고가 정한 방침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계약내용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제2조(업무범위)

원고는 본인 소유차량을 피고의 협력업체 및 피고의 고정 물동량 화물운송 및 배차방침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원고와 피고의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원활한 회사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여 협력한다.

제3조(업무내용)

③ 원고는 피고가 정하는 화물운송지침 및 방침, 규정에 의하여 모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이행의무)

① 원고는 피고의 규정 및 방침에 의한 운송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화물에 대한 위/수탁증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는 운송(유료대) 용역비를 수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세금계산서, 사업자등본, 통장 계좌번호 등)를 피고가 지정한 날까지 제출한다.

제9조(유류대)

피고가 원고에게 유가보조금을 제외하고 매월 15일 계산서를 발행하고 지급한다.

제10조(운송비정산)

① 피고가 원고에게 운송비 월 5,200,000원(공급가액)을 정하고, 마감 후 10일 현금(통장)으로 지급한다.

② 원고는 피고의 운송구간 및 물동량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임의 퇴사 시에는 상기 정한 운송비 지급일을 30일 후 지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계약해지)

본 계약은 2014. 7. 1.부터 2015. 7. 1.까지로 하며,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2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상호 하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동일한 조건상의 자동연장 계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계약해지 요건)

- ① 피고의 배차 지시 등 계약내용과 부합한 정당한 배차에 불응하는 경우
- ② 원고가 본 계약을 성실히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피고의 규정 및 방침을 위배한 경우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체결 후 'D'라는 상호로 화물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E'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을 운송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E의 운영자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원고가 운송한 물량에 대하여 구간별·차종별 운송료 단가에 따라 계산된 운송료를 E 측에서 지급받고 그 일부를 이 사건 운송주선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운송비로 지급하였는데, 위 운송주선계약 체결 무렵에는 월 5,200,000원을, 이후 이를 점차 인상하여 2017년경부터는 매월 5,4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직원 F은 2018. 9. 30. 원고와 회식 후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원고가 자신을 욕하자 원고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이 법원 2019고정27, 이하 '2018. 9. 30.자 상해사건'이라 한다), 이후 2019. 3. 13. E 작업장에서 원고가 길을 빨리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목살을 잡고 뒤로 밀쳐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아(이 법원 2019고정84) 현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며, 위 2019. 3. 13.자 사건(이하 '2019. 3. 13.자 상해사건'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원고가 2019. 3. 14.까지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피고의 대표이사 H와 직원 I은 2019. 3. 15.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냈고, 피고는 밀양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의 휴업(기간: 2019. 3. 11. ~ 2019. 6. 11.)을 신고하였다. H는 위와 같이 번호판을 떼어낸 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와의 위수탁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휴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을 뗐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는 2019. 3.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9. 3. 13. 기사와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피고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한편 운송을 거부하고 주차장에 올라왔고, 영업부 사람에게만 이야기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을 운송에서 제외하라는 E 측 요청이 있으므로, 2019. 3. 13.자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4, 22, 23, 30, 46, 49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이 사건 위수탁계약 해지는 그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무효임에도, 피고의 대표이사 H와 직원 I이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탓에 원고가 2019. 3. 15.부터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할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H와 I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그밖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주선계약에 따른 미지급 운송비, 유류대금과 원고가 피고 대신 우선 부담한 이 사건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용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 대표이사 H는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 교체를 위해 밀양시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번호판을 차량등록소가 가져오라고 하여 이를 떼어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원고가 자신의 사업 수행 및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 비용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었는지에 관하여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0조의3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수탁차주로 하여금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운송거부 등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2018. 9. 30.자 및 2019. 3. 13.자 각 상해사건은 원고가 F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그로 인한 책임을 피해자인 원고에게 물을 수 없다), ②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하는 사유 자체를 보더라도 이를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1 제4호가 정한 '위·수탁차주가 사고·질병 또는 국외 이주 등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위탁받은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9.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2019. 3. 13.자로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을 뿐 화물자동차법이 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위수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 H와 직원 I이 2019. 3. 15.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 번호판을 떼어냄으로써 원고가 위 차량을 운행하여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위와 같은 H와 I의 행위는 그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및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H와 I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바(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는 H와 I이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가지 않았더라면 2019. 3. 15. 이후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얻을 수 있었던 운송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로부터 매월 운송비를 지급받은 사실, 2017년경 이후로는 그 운송비가 매월 5,400,000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19. 3. 15.부터 2019. 9. 14.까지의 운송비 상당액 32,400,000원(= 5,400,000원 × 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다투면서 이 사건 차량 번호판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장래 발생할 운송비 상당의 손해배상금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는 2019. 9. 15.부터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날까지 월 5,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3.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9. 15.부터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날까지 월 5,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이상 선택적 청구 관계에 있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그 밖의 비용 청구에 관하여

1) 미지급 운송비 피고는 이 사건 운송주선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2017년 이후 위 운송주선계약에 따른 운송비가 월 5,4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9년 3월분 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비 2,438,709원(= 5,400,000원 × 14일/31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유류대금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2. 3.부터 2019. 3. 12.까지 유류대금으로 합계 3,604,34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운송주선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 3,604,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유류대금이 총 4,104,33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제7쪽 'J주유소 영수증 내역'에 기재된 2019. 2. 24.자 500,000원은 원고가 이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용 살피건대, 교통안전법 제55조의2, 제55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그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자로서(원고는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 또는 '위·수탁차주'에 불과하다) 위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용으로 500,000원을 지출한 사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부착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용 500,000원을 대신 지출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위 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비, 유류대금 및 부당이득금 6,543,049원(= 2,438,709원 + 유류대금 3,604,340원 +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용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4. 25.부터2)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심현욱

판사강성영

판사박지연

별지

1)화물자동차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에게 차량과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이 사건 운송주선계약에 따른 운송비 및 유류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이 사건 운송주선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지급시기를 알기 어렵다),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